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 행허가는 20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사항	차종	차명	
	차대번호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규격 × (mm)	
	운행목적		
	운행기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시험·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연구 계획서	수수료 1대에 대하여 1,800원.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	--

유의사항

-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4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규등록신청·차대번호 표기·자동차검사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나.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다.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확인 또는 특수한 설비 설치를 위한 운행: 40일 이내
라. 시험·연구 목적의 운행: 2년 이내(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위한 경우에는 5년)
마.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 목적의 운행: 5년 이내. 다만, 시험·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한 차례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다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